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제17조에 따라,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9. 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외연구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외연구비 외부지원기관에서 본 대학교 교직원(연구원 포함)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 및 지원비를 말한다.
2. “교외연구비 외부지원기관”(이하 ‘외부지원기관’이라 함)은 연구계약을 체결하여 본교에 연구과제 수행을 의뢰하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교외연구비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함)은 총장의 위임을 받아 교외연구비 관리 등 사무를 관장하는 본교의 기관을 말한다.
4. “교외연구비 중앙관리”라 함은 관리기관이 구성원 개개인을 대신하여 제반 연구에 필요한 물품 조달과 경비집행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교외연구비 관리체계를 말한다.
5. “간접비”라 함은 교외연구비 중에서 일정률을 징수한 경비와 외부지원기관에서 교외연구비에 부수하여 지급한 경비 및 기타의 방법으로 조달한 경비를 말한다.
6.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사업 또는 과제에 대해 관리의무를 가진 총괄적인 책임자를 말한다.
7. “연구계약”이란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장 간의 연구과제에 대한 계약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교외연구과제) ① 교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본 대학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외연구비 공고에서 비전임교원이나 연구원(학생연구원 포함) 또는 직원을 연구책임자로 할 수 있는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장은 해당 비전임교원이나 연구원 또는 직원의 임용기간, 연구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들을 연구책임자로 승인할 수 있다.

②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산학협력단(또는 대학)과 연구 위탁기관 사이에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나 연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산학협력단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연구책임자나 연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은 해당 손해를 우선 배상하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에게 동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위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장은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액 청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연구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⑥ 연구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연구책임자는 이 사실을 즉시 연구산학협력단에 통보해야 하며, 연구산학협력단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2장 교외연구비 관리

제4조 (회계) 교외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본 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제5조 (연구과제 신청)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산학협력단을 거쳐야 한다.

② 연구산학협력단은 연구과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외부지원기관에 신청한다.

제6조 (연구계약) ① 연구과제 신청(제안) 및 연구계약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연산지원팀을 경유하여 연구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신청(제안) 및 연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외부지원기관의 불가피한 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총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부득이한 경우 개인 명의 또는 연구소 명의로 외부지원기관과 직접 연구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연산지원팀에 통지하여 연구산학협력단에 관리를 위임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외부지원기관에서 지정하는 서식의 연구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며, 연구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지한다. 외부지원기관에서 지정한 양식이 없을 경우 본교의 연구용역 계약서[별지 3]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제7조 (실행예산서) ① 연구책임자는 교외연구비가 확정되면 외부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교외연구비 실행예산서(이하 “실행예산”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행예산의 변경은 외부지원기관에서 정한 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의하되, 관리기관의 자체승인 사항일 경우에는 본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산학협력단에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지급절차 및 대여금 지원) ①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본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연구산학협력단에 교외연구비의 지급을 청구한다.

② 연구산학협력단은 전항의 교외연구비 지급청구, 정산, 실행예산 및 입금된 교외연구비를 검토한 후 지출결의한다.

③ 교외연구비 중 연구원의 인건비와 인건비성 연구비(인센티브 등)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지출결의하여 직접 본인에게 지급한다.

④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요청하고 이에 대한 연구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거쳐 대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연구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대응자금의 지원) ① 대응자금은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규정 제7조를 준수하여, 본교 교직원(연구원 포함)이 연구책임자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규모와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이 결정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응자금 신청서[별지 1]와 대응자금 사용계획서[별지 2]를 작성하여 문서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연산기획평가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응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간접비 징수액에서 대응자금을 제한 금액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대응자금은 연구수당으로 집행할 수 없다.

제10조 (교외연구비의 사용) ① 교외연구비는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제8조를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세부 사용기준은 ‘연구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사용 지침’을 따른다.

② 교외연구비의 집행 잔액과 이자는 외부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비로 불입

한다.

③ 교외연구비 사용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외부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의 평가결과, 수행포기, 연구보안 위반, 연구부정행위, 교외연구비 부정사용, 협약 위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을 사유로 교외연구비 환수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단, 연구책임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연구산학협력단은 교외연구비가 연구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외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외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교외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외부지원기관에서 교외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통보가 있을 경우
2.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물품의 구입)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용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연구산학협력단에 물품구매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용 물품은 연구산학협력단장이 연구용 물품관리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하되,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본교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부지원기관의 물품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 연구책임자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용 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1. 연구산학협력단장이 자체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한 경우
2. 연구수행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원격지 현지구매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④ 교외연구비로 구입한 10만원 이상의 도서는 중앙도서관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단, 전자책, 멀티미디어자료 등 도서관시스템에 등록하여 공동 이용할 수 없는 도서와 정기간행물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 (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외부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재하고, 연산지원팀에서 이를 확인 후 연구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14조 (연구결과 보고)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결과보고서를 외부지원기관 또는 연구계약에 명시된 기관에 제출한다.

제15조 (정산) ① 연구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자는 외부지원기관의 교외연구비 정산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기 사용된 교외연구비를 정산한다.

② 외부지원기관에서 별도의 정산요청이 없을 경우, 이 규정 제10조 제2항에 준하여 정산한다.

제3장 간접비 징수 및 관리

제16조 (회계) 간접비의 수입과 지출은 본 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제17조 (징수 및 관리) ① 간접비는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징수 및 관리하며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적립된 기금의 용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③ 연구산학협력단장은 전임교원의 간접비 기여정도를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징수대상) ①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연구산학협력단장은 모든 교외연구비, 위탁사업비, 학술활동지원비, 산업체 위탁연구비 및 센터(연구소)의 자체사업으로 발생한 수익 등에 대하여 간접비를 징수한다.(개정 2026. 9. 1.)

② 외부지원기관이 교외연구비 이외 별도의 간접비를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 금액을 연구산학협력단이 징수하는 간접비로 본다.

③ 외부기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인 경우에는 본 대학교의 교직원(연구원 포함)에게 지급되는 교외연구비를 기준으로 간접비를 징수한다. 단, 본 대학교의 교직원(연구원 포함)이 연구책임자인 경우에는 본 대학교에 배정된 교외연구비에 대해서 간접비를 징수한다.

제19조 (징수비율) 연구산학협력단의 간접비 징수비율은 다음 각호의 원칙을 따른다.(개정 2026. 9. 1.)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고시된 당해연도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의 최상률

2. 외부지원기관에서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한 경우 그 지원기관이 정한 기준의 최상률. 단, 외부지원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은 사전 공개된 공식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어야 한다.

3. 간접비 계상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교외연구비의 20% 이상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액 삼천만원 미만의 연구 등은 <별표 1> 금액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을 따른다.

4. 상기 각호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른 간접비 총액의 천단위 미만은 절사 가능

제20조 (사용) 간접비는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제13조에 따라, 연구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사용한다.(개정 2026. 9. 1.)

1. 인력지원비

2. 연구지원비

3. 성과활용지원비

4. 운영위원회가 기타 연구지원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1조 (연구개발능률성과급) ① 연구산학협력단장은 연구수행실적, 간접비 기여실적, 연구성과, 연구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22조 (보칙)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산학협력단장이 지침 또는 내규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_금액에 따른 간접비 계상 기준> (신설 2024.03.01.)

간접비 산정 구간		간접비 계상
연구비 총액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총 교외연구비의 16% 이상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총 교외연구비의 14% 이상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총 교외연구비의 12% 이상
	500만원 미만	총 교외연구비의 10% 이상

※ 본 간접비 계상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연구과제의 경우 총 교외연구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교외연구비를 의미함.

대응자금 신청서

사 업 내 역	사업책임자	대학 학과(부) 성명 :
	지 원 기 관	
	사 업 명	
	연구과제명	
	총 사업(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사업(연구)비	원 (※현물제외)
	당해연도 사업(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차년도)
	당해연도 사업(연구)비	원 (※현물제외)
대응자금 신청 및 사용계획		※ 대응자금 신청액 : 원 ※ 대응자금 사용계획 - 사용처 : - 금 액 :
※ 첨부: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사본 1부 상기와 같이 대응자금 지원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책임자 : (인) 소속 대학(원)장 : (인)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연구산학협력단장 귀하		

대응자금 사용계획서

NO	예산비목	예산신청금액	산출근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총액			

연구용역 계약서

○ 연구과제명 :

○ 계약당사자 :

주식회사_____대표이사 _____(이하 “회사” 라고 한다)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장 _____(이하 “대학” 이라고 한다)

○ 연구책임자 :

성신여자대학교 _____학과 교수 _____(이하 “교수” 라고 한다)

상기 연구과제에 대하여 “회사”, “대학”, “교수”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한다.

제1조(목적 및 범위)

- ① 본 계약의 목적은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목적과 같다.
- ② 본 계약의 범위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와 같고, “교수”가 연구완료 후 “회사”에게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연구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
- ③ 본 계약에서 “연구결과”라 함은 계약에 따른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한 연구 기자재 및 연구시설 또는 그 외의 시작품, 샘플, 정보, 아이디어, 디자인 등 연구와 관련되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을 의미한다.

제2조(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이다.

제3조(연구비 금액 및 지급조건)

- ① 본 연구에 소요되는 연구비는 일금_____원정(W_____); 부가세포함)으로 한다.
- ② 본 연구에 소요되는 간접연구경비는 총연구비의 _____%로 한다. (간접비규정에 따라 기재함)
- ③ 연구비는 전액 “회사”가 부담하며, “회사”는 아래와 같이 2회로 나누어서 “대학”에게 현금지급한다. (1회는 “아래...나누어서” 삭제 후 “일시불로”를 “현금지급한다” 앞에 삽입함, 3회이상은 1차, 2차, 3차..로 수정)
 1. 선금금 : 일금_____원정(W_____),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전체 연구비의 50% 이상_2회 분납의 경우)
 2. 잔 금 : 일금_____원정(W_____), 제4조의 연구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또는 20 년 월 일까지) (기재 후 삭제)

제4조(연구보고서 제출)

- ① “교수”의 연구종료 후 “대학”은 본 연구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____부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중간보고서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보고서가 없는 경우 본 조항의 연구보고서와 결과보고서는 연구결과물로 수정함)
- ② “회사”는 “대학”이 제출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일 내 내용을 검수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서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일 이내의 기한을 두고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수정 또는 보완된 최종보고서에 대한 재검수 절차는 이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계약의 변경)

“회사”와 “대학”은 상호 합의하에 본 계약의 내용과 연구과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본 계약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은 문서로써 되어야 하며, 만일 그 변경된 문서가 취소 될 경우에는 본 규정이 적용된다.

제6조(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및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대학”의 상호 협의에 의한다.

제7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 ① “회사”와 “대학”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교수”는 전 연구과정을 통하여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 “회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회사”는 연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교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 ① “회사”, “대학”, “교수”는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쌍방의 잘못에 의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공개된 경우
 2. 상대방에 의하지 않고 각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알게 된 경우
 3.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제3자에 의해 공개된 경우
- ② 제1항의 의무를 지는 기간은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 및 본 계약기간 종료 후 3년간으로 하며, 본 계약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때에도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9조(연구결과의 발표)

- ① 본 계약에 따라서 “회사”는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과 학문자유 원칙에 따라 “대학”의 소속 연구원들이 연구 활동 결과를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최소한 발표 30일 전에 “대학”은 “회사”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사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보호

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발표를 반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학”은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가 아니면 발표를 하지 못한다.

제10조(연구결과 등의 귀속)

- ①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시작품은 “회사”의 소유로 하고,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은 “대학”의 소유로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시작품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연구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인수를 최고하고, “회사”가 그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시작품을 인수하는 경우에 동 시작품에 부과되는 제세공과와 인수비용은 별도로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발명 등의 귀속, 처분, 수익배분)

- ① 연구과정 중 “회사” 또는 “대학”의 연구원이 단독으로 구상한 발명, 노하우 등은 “회사” 또는 “대학”의 단독소유로 하고, “회사”와 “대학”의 연구원이 공동으로 구상한 발명, 노하우 등은 “회사”와 “대학”의 공동소유로 한다.
- ② “회사”와 “대학”의 연구원이 공동으로 구상한 발명 등을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 출원(이하, 출원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 “대학”은 “회사”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회사”는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출원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출원을 동의하거나 “회사”가 먼저 서면으로 출원 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와 “대학”의 공동명의로 출원한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절차 및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③ “회사”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대학”은 단독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특허출원비용은 전액 “대학”의 부담으로 한다.
- ④ “회사” 또는 “대학”은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때 상대방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 ⑤ “회사” 또는 “대학”은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⑥ “회사”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의 지분 양도 및 제3자 실시에 대한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이유(“회사”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 “회사” 또는 “대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특허관리전문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 “회사”의 사업화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업 등)가 없다면 동의에 협조하도록 한다. 단, “대학”이 “회사”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제3의 기업 또는 “대학”의 지주회사에게 실시권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통보만으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⑦ “대학”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회사”의 지분 양도 및 제3자 실시에 대한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동의에 협조하도록 한다. 또한, 해외법인 등 자회사의 경우에는 “대학”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통보만으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⑧ “회사” 또는 “대학”이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반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 수익금의 배분율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

⑨ “회사” 또는 “대학”이 자기 실시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해야한다. 다만 수익금의 배분율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⑩ 본 연구결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상외의 이익은 “회사”와 “대학”의 별도 합의에 의해 배분한다.

제12조(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본 연구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재산권 일체와 이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대학”에 귀속된다.

제13조(명칭사용)

“회사”는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연구로 “회사”가 취득한 정보 및 “대학”이 “회사”에게 제출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 복제, 또는 복사물을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대학”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권리양도의 제한)

“회사”와 “대학”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취득되는 제반권리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와 “대학”은 서면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회사”는 본 계약 체결 후 법인의 주소, 상호, 기타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대학”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대학”의 착오는 “회사”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학”이 본 연구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대학”이 본 계약에 위반하여 “회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대학”에게 해지의 의사를 서면 통보한 후 쌍방이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대학”은 다음의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회사”가 본 계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학”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사”에게 이의 개선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현저한 개선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회사”의 주요재산이 압류, 가압류, 파산, 강제화의, 회사정리절차개시, 폐업, 휴업 등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회사”가 지불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를 위반하여 “대학”으로부터 시정을 요구받고서도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 계약이 해지 될 경우에는 “대학”은 해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시까지의 연구비집행정산서 및 연구보고서를 “회사”에게 제출하고 “회사”는 계약 해지일까지 소요된

모든 연구경비를 “대학”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④ 기타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와 “대학”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제17조(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① “회사”와 “대학”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본 계약의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본 연구 및 연구결과물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제3자와의 담보책임, 소송, 고소 등의 법적 분쟁으로부터 “대학”을 보호할 책임을 지며, 이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한다. 단, “대학”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일어난 경우에는 보호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회사”가 “대학”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그의 해결을 위해 “대학”은 “회사”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한다.

제18조(불가항력)

“회사”와 “대학”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화재, 홍수, 정부법령, 폭동, 반란, 재해, 산업혼란, 노동쟁의 등에 의한 본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당사자는 상세한 사항과 진전 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일반관례에 따라 본 계약의 당사자 간 합의로 이를 원만히 상호 합의 하에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양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20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하기의 계약일로부터 유효하다. 상기와 같이 계약하며,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회사”, “대학”, “교수”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일: 20 년 월 일

“회사”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주소 :

“대학”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장

(인)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학과 교수 (인)

- 붙임 1. 연구계획서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